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구 미 시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관련근거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함.

2.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승인액	지출액	비고
합계					813,500,000	51,986,020	
어르신 복지과	노인복지증진	행복한노후 생활보장	화장시설운영	시설비	800,000,000	38,486,020	잔액 12월말 지출예정
일자리 경제과	경제생활안정	시민경제 생활안정및보호	재난피해 소상공인지원	민간인재해및 복구활동보상금	13,500,000	13,500,000	

3. 예비비 지출 사유

가. 구미시추모공원 호우 피해 복구공사

- 호우피해로 인해 유실된 진입도로(우수관로) 및 절개지 침식 사면을 신속히 복구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비 사용을 통한 신속한 실시설계용역 및 복구공사 실시

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1) 호우피해 소상공인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 경영
안정 도모
- 2) 예비비 사용을 통한 신속한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

4. 사업별 집행(예정) 내용

가. 구미시추모공원 호우 피해 복구공사

1) 피해지역 응급복구 실시(복구 완료)

가) 구미시추모공원 진입도로 응급복구공사 : 19,080,000원

나) 구미시추모공원 우수관로 응급복구공사 : 19,457,330원

2) 구미시추모공원 진입도로 수해 복구공사

가) 사 업 비 : 550백만원

나) 사업내용 : 진입도로 복구, 소하천 및 저류지 연결 등 배수시설 정비

다)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 : '24. 7. ~ 10.

○ 진입도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완료 : '24. 10.

○ 소하천 연결 공사(우수관로 정비) 완료 : '24. 11.

○ 저류지 연결 공사(우수관로 정비) 완료 : '24. 12.

3) 구미시추모공원 절개지 사면 복구 공사

가) 사 업 비 : 210백만원

나) 사업내용 : 절개지 침식 사면 녹화작업 등을 통한 보강 및 정비

다)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 : '24. 9.

○ 사면 복구공사 완료 : '24. 12.

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1) 지급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2조

라)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조

2) 지급대상 :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장 8개소

3) 지 급 액 : 1개소당 3,000천원

4) 피해내용 : 영업장 침수(바닥, 집기 파손 및 냉장고 고장 등)

5) 소요예산 : 24,000천원

가) 국·도비 : 10,500천원(국 7,500 도 3,000)

나) 시 비 : 13,500천원(예비비)

관계법령

□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 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생계안정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 * 재난으로 소상공인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 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를 말함 - 피해액은 영업결손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은 제외 - 재해 소상공인이 제시하는 피해액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 지원대상 제외업종 :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중소벤처기업부) - 별도지원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하는 200만원은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라.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 지원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단가
: 3,000,000원/업체

소 관 부 서		예산재정과
입 안 자	과 장	강 호 근
	팀 장	조 민 규
	담 당 자	석 병 훈 (480-2532)